

# 신구조문 대비표

2022.9.1.자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 개정(안)

개정 전				개정 후				
<b>학칙 제4조(모집단위 및 신입생기준 입학정원)</b> ① (생략) ② 전문학사과정에 두는 전공(학과) 및 입학정원은 다음과 같다. 다만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2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의 입학의 경우에는 별도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의한 정원 외 학생 수는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2항의 규정에 따른다.				<b>학칙 제4조(모집단위 및 신입생기준 입학정원)</b> ① (현행과같음) ② 전문학사과정에 두는 전공(학과) 및 입학정원은 다음과 같다. 다만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2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의 입학의 경우에는 별도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의한 정원 외 학생 수는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2항의 규정에 따른다.				
스쿨(과)	모집단위	입학정원	학제	스쿨(과)	모집단위	학제	2022학년도 입학정원	2023학년도 입학정원
융합콘텐츠	융합콘텐츠창작전공	50	3년제	융합콘텐츠	융합콘텐츠창작전공	3년제	50	83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전공	230	3년제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전공	3년제	230	245
만화콘텐츠	웹툰만화콘텐츠전공	180	3년제	만화콘텐츠	웹툰만화콘텐츠전공	3년제	180	200
	웹소설창작전공	76	3년제		웹소설창작전공	3년제	76	92
게임콘텐츠	게임전공	240	3년제	게임콘텐츠	게임전공	3년제	240	245
	푸드스쿨전공	-	3년제		푸드	푸드스쿨전공	3년제	-
패션뷰티스타일	패션메이커스전공	-	3년제	패션뷰티스타일		패션메이커스전공	3년제	-
	스타일리스트전공	60	3년제		스타일리스트전공	3년제	60	60
공연예술	연출극작전공	5	3년제	공연예술	연출극작전공	3년제	5	5
	뮤지컬연기전공	40	3년제		뮤지컬연기전공	3년제	40	25
	연극영상연기전공	45	3년제		연극영상연기전공	3년제	45	45
	무대미술전공	50	3년제		무대미술전공	3년제	50	50
모바일IT	모바일통신전공	40	2년제	모바일IT	모바일통신전공	2년제	40	-
	스마트미디어전공	-	3년제		스마트미디어전공	3년제	-	-
유아교육과	유아교육과	-	3년제	유아교육과	유아교육과	3년제	-	-
합계		1,136		합계			1,136	1,122
③.④.⑤ (생략)				③.④.⑤ (현행과같음)				
<b>학칙 제28조(교과이수단위)</b> ①.② (생략) ③ 학생은 매학기(학년도를 2학기로 운영하는 경우) 15학점 이상 수강함을 원칙으로 하되 22학점 이상을 초과하여 수강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수강신청정정기간까지 수강학점조정신청을 한 후 총장의 승인을 얻어 15학점 미만 또는 22학점 초과하여 수강할 수 있다 ④.⑤ (생략)				<b>학칙 제28조(교과이수단위)</b> ①.② (현행과같음) ③ 학생은 매학기(학년도를 2학기로 운영하는 경우) 15학점 이상 수강함을 원칙으로 하되 22학점 이상을 초과하여 수강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수강신청정정기간까지 수강학점조정신청을 한 후 교무처장의 승인을 얻어 15학점 미만 또는 22학점을 초과하여 수강할 수 있다 ④.⑤ (현행과같음)				
<b>학칙 제28조6(집중수업)</b> ① 제9조(수업일수)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상세내용은 집중수업에 관한 지침(제정 2016.3.1.)을 따른다. ② 학생들의 교육효과와 현장적응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수업을 실시 할 수 있으며, 지침				<b>학칙 제28조6(집중수업)</b> ① 제9조(수업일수)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교육효과와 현장적응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수업을 실시 할 수 있으며 집중수업에 관한 지침 이외의기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② <삭제>				

~~이외의 집중수업에 관한 기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학칙 제55조(부속기관)**

① 우리 대학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부속기관을 둔다.

1. 문화정보센터
2. 청강뮤지엄(비춤)
3. 만화영상도서관
4. 만화역사박물관
5. 미디어센터
6. HRM센터
7. 성과관리센터
8. 평생교육원
9. 문화콘텐츠아카데미
10. 메이커스랩
11. 미래교육연구센터
12. 교육과정혁신센터
13. 스마트교수학습지원센터
14. 학사학위운영센터
15. 관리센터
16. 전자계산소
17. 취업창업교육지원센터
18. 현장실습지원센터
19. 대학일자리센터
20. 취업브리지사업단
21. 학교기업 (쿨투라, CCRC)
22. 기업신속대응센터
23. 역외센터
24. 중장년기술창업센터
25. 창업보육센터
26. 학생상담센터
27. 성희롱성폭력상담센터
28. 기숙사
29. 보건실
30. 예비군대대
31. 혁신지원사업단
32. 신산업특화선도전문대학지원사업추진단

② (생략)

**학칙 제55조의2(학교기업의 현장실습)**

① (생략)

② 학교기업에서의 방학 중 현장실습교육을 4주이상 이수한 경우 이를 2학점으로 인정한다. 단 학기 내 교과 중 현장실습 운영 시 12주이상 운영하며 전공의 특성에 따라 부여 학점을 조정할 수 있다.

**학칙 제55조(부속기관)**

① 우리 대학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부속기관을 둔다.

33. 문화정보센터
34. 청강뮤지엄(비춤)
35. 만화영상도서관
36. 만화역사박물관
37. 미디어센터
38. HRM센터
39. 성과관리센터
40. 평생교육원
41. 문화콘텐츠아카데미
42. 메이커스랩
43. 미래교육연구센터
44. 교육과정혁신센터
45. 스마트교수학습지원센터
46. 학사학위운영센터
47. 관리센터
48. 전자계산소
49. 취업창업교육지원센터
50. 현장실습지원센터
51.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52. 취업브리지사업단
53. 학교기업 (쿨투라, CCRC)
54. 기업신속대응센터
55. 역외센터
56. 중장년기술창업센터
57. 창업보육센터
58. 학생상담센터
59. 인권·성평등센터
60. 기숙사
61. 보건실
62. 예비군대대
63. 혁신지원사업단
64. 신산업특화선도전문대학지원사업추진단

② (현행과같음)

**학칙 제55조의2(학교기업의 현장실습)**

① (현행과같음)

② 학교기업에서의 방학 중 현장실습교육을 1개월이상 이수한 경우 이를 2학점으로 인정한다. 단 학기 내 교과 중 현장실습 운영 시 3개월이상 운영하며 전공의 특성에 따라 부여 학점을 조정할 수 있다.

<p>③ &lt;삭제&gt; ④ (생략)</p>	<p>③ &lt;삭제&gt; ④ (현행과같음)</p>
<p><b>제15장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처리</b> <b>학칙 제56조(목적)</b> 이 규정은 청강문화산업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의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에 대한 대책·마련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b>제57조(정의)</b>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성희롱"이란 성범죄의 구성 여부와 관계없이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이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교육상 또는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일체의 행위로서, 그 기준은 피해자의 합리적인 주관적 판단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목의 경우를 포함한다. —기.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성적 행동과 요구 등 언어적, 정신적 신체적인 행위를 통하여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 —나. 기목적 행위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학업평가, 고용, 연구,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②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성폭력"이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을 받는 위법행위를 말한다. ③ "피해자"라 함은 성희롱·성폭력 행위로 인하여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로 당한 사람을 말한다. ④ "기해자"라 함은 교내 성희롱·성폭력 예방위원회에서 피신 교인의 행위가 성희롱·성폭력으로 의결된 사람을 말한다. ⑤ "신고인"이라 함은 성희롱·성폭력의 발생을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 ⑥ "피신고인"이라 함은 성희롱·성폭력 행위가 지목되어 신고된 사람을 말한다. ⑦ "사건관련인"이라 함은 신고인, 피신고인, 피해자, 기해자, 참고인 등 당해 사건에 관련된 사람을 말한다. ⑧ "2차 기해"라 함은 당해 사건을 누설하거나 사건관련인의 신원을 노출하는 행위, 피해자가 원치 않는데 접촉하거나 화해를 종용하는 행위, 고의적으로 사건을 은폐·축소하거나 사건 해결을 지연시키는 행위 등으로 피해자를 포함한 사건관련인에게 부당한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한다. <b>제58조(적용범위)</b> 대학 학칙을 적용 받는 모든 구성원에게 적용된다. <b>제59조(기관장의 책무)</b> 총장은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의 설치·운영, 성희롱·성폭력 고충 처리절차의 마련 등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한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강구하여야 한다. <b>제60조(성희롱·성폭력상담센터)</b> ①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소속 직원의 성희롱·성폭력 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처리를 위하여 성희롱·성폭력 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p>	<p><b>제15장 인권·성평등</b> <b>학칙 제56조(인권·성평등센터)</b> 대학은 구성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포함한 인권의 보호와 침해행위 예방을 위하여 인권·성평등센터를 설치해야하며 자세한 내용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b>학칙 제57조 ~ 69조 &lt;삭제&gt;</b></p>

라 한다)를 둔다.

② 상담센터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을 지정하되, 인사 또는 복무 담당 직원을 포함하여 2인 이상으로 하고, 남성 및 여성 상담원이 반드시 각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③ 상담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외 같다.

1.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상담·조언 및 고충의 접수
2.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리
3.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조정에 관한 사항
4. 성희롱·성폭력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5.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기타 성희롱·성폭력 예방 업무

④ 상담센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61조(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① 상담센터장은 매년 2월 말까지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내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은 전문기 강의, 시청각 교육 등의 방법으로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희롱·성폭력 관련 법령
2.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4. 성희롱·성폭력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5. 기타 성희롱·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등

③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 상담센터장은 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참석자 명단, 교육내용 등이 명시된 교육실시 관련 자료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62조(고충 신청) ① 성희롱·성폭력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거나 성희롱·성폭력 고충의 처리를 원하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서면, 전화, 통신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상담센터에 고충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고충의 신청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제63조(상담 및 조사) ① 상담원은 성희롱·성폭력과 관련하여 상담·고충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조사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 법령에 의해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 중이거나, 피해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때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④ 조사 과정에서 상담센터장은 사안과 관계된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부서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㉔ 성희롱·성폭력사건 조사 진행상황을 피해자에게 서면, 전자우편, 유선 등 방법을 통해 알려 주어야 한다.

㉕ 센터가 제㉔항외의 다른 경로로 성희롱·성폭력 침해 사실을 인지한 경우, 피해가 계속된다고 판단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이를 방지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직권으로 사건을 조사 처리 할 수 있다.

**제64조(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 ㉑ 총장(인사·복무 등에 관한 권한을 총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자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㉒ 총장은 피해자와 피해를 주장하는 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행위자와의 업무분장과 업무공간을 분리하는 등 피해자의 신변을 보호해야 한다.

㉓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피해자 치료 지원, 행위자에 대한 인사 조치 등을 통해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근로권·학습권 등을 보호하여야 한다.

㉔ 상담원 등 성희롱·성폭력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㉕ 사건당사자가 사건에 대한 자료 열람을 요청할 경우,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에 응할 수 있다. 단, 사건관련자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와 사건처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공개하지 않을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의 범위를 제한하거나 열람을 불허할 수 있다.

**제65조(조사결과와 보고 등)** ㉑ 상담원은 성희롱·성폭력 사안에 대한 조사의 완료 즉시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㉒ 총장은 성희롱·성폭력 사안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성폭력예방위원회의 토의에 부처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6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㉑ 성희롱·성폭력 사안의 처리 또는 대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성희롱·성폭력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위원회 구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㉒ <삭제>

㉓ <삭제>

**제67조(위원회의 회의)** ㉑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㉒ 위원회의 위원 중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산고안은 특정위원 기피신청이 가능하고 해당위원은 회피할 수 있다.

**제68조(조사의 종결)** 조사결과 성희롱·성폭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통보 후 조사를 종결한다.

**제69조(재발방지조치 및 징계 등)** ㉑ 총장은 성희롱·성폭력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서전환, 행위자에 대한 재

<p>발방지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조치는 피해자 및 조사 등에서 협력하는 자에게도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p> <p>㉔ 총장은 법령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성희롱 성폭력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p> <p>㉕ 성희롱 성폭력 등을 저지른 행위자의 행위가 중징계에 해당하는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의원면직을 제한하여야 한다.</p> <p>㉖ 제69조의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한 성희롱 성폭력 사안의 처리 후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 전자우편, 유선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p> <p>㉗ 피 신고인이 본교 구성원이 아닌 경우에는 소속기관에 사건에 대한 조사, 징계 또는 기타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p> <p><b>제69조의1(가중조치 및 가중징계)</b> 피 신고인이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성희롱 성폭력 예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가중조치 하거나 해당 징계기관에 가중한 징계 또는 별도의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p> <p>① 피 신고인이 재범일 경우</p> <p>② 피 신고인이 성희롱 성폭력 상담센터의 조치를 불이행하는 경우</p> <p>③ 피 신고인이 신고인, 피해자, 대리인 및 참고인, 신고인 등에 대한 신원노출과 명예훼손, 보복행위 등의 피해를 끼치거나 2차 피해행위를 했을 경우</p> <p>④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 대리인 또는 주변인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거나 직접 접촉하여 합의를 강요한 경우</p>	
<p><b>학칙 부칙 (개정 2022.9.1.)</b> (신설)</p>	<p><b>학칙 부칙 (개정 2022.9.1.)</b> 제1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과로 인한 학생의 경과조치) 2023학년도 모집을 정지한 모바일통신전공의 경우 해당 전공으로 졸업할 수 있도록 2025학년도 1학년 복학생까지 전공을 유지한다. 전공 유지 기간 이후에는 해당 학기 전과 정원에 관계없이 희망하는 전공으로 소속을 변경할 수 있다.</p>
<p><b>학칙 [별지 제3호] 교충 접수/처리대장</b></p>	<p><b>학칙 [별지 제3호] &lt;삭제&gt;</b></p>
<p><b>학칙 [별지 제4호] 성희롱 교충 신청서</b></p>	<p><b>학칙 [별지 제4호] &lt;삭제&gt;</b></p>
<p><b>학칙시행세칙 제1조의2(스쿨의 전공(과) 및 세부전공)</b> ① 학칙 제4조 ④에 의거 스쿨 내 전공(학과) 및 세부전공은 아래와 같다. &lt;전문학사과정&gt;</p>	<p><b>학칙시행세칙 제1조의2(스쿨의 전공(과) 및 세부전공)</b> ① 학칙 제4조 ④에 의거 스쿨 내 전공(학과) 및 세부전공은 아래와 같다. &lt;전문학사과정&gt;</p>

스쿨(과)	전공	세부전공	비고
융합콘텐츠	융합콘텐츠창작전공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전공		
만화콘텐츠	웹툰만화콘텐츠전공		
	웹소설창작전공		
게임콘텐츠	게임전공	게임그래픽, 게임프로그램밍, 게임기획, 게임운영 및 QA	
푸드	식품영양전공		
	푸드스쿨전공		
	푸드전공		
패션뷰티스타일	패션메이커스전공		
	스타일리스트전공		
공연예술	연출극작전공		
	뮤지컬연기전공		
	연극영상연기전공		
	무대미술전공	무대디자인제작, 조명디자인	
모바일IT	모바일통신전공		
	스마트미디어전공		
유아교육과	유아교육과		

스쿨(과)	전공	세부전공	비고
융합콘텐츠	융합콘텐츠창작전공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전공		
만화콘텐츠	웹툰만화콘텐츠전공		
	웹소설창작전공		
게임콘텐츠	게임전공	게임그래픽, 게임프로그램밍, 게임기획, 게임운영 및 QA	
푸드	식품영양전공		
	푸드스쿨전공	조리, 카페베이커리, 식품영양, 푸드스타일 리스트, 푸드콘텐츠, 팜푸드비즈니스	2018학번 포함 이전 입학생에 한함.
	푸드전공		
패션뷰티스타일	패션메이커스전공		
	스타일리스트전공		
공연예술	연출극작전공		
	뮤지컬연기전공		
	연극영상연기전공		
	무대미술전공	무대디자인제작, 조명디자인	
모바일IT	모바일통신전공		
	스마트미디어전공		
유아교육과	유아교육과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

학과	전공	비고
만화애니게임학과	웹툰만화콘텐츠전공	
	애니메이션전공	
	게임전공	
공연예술학과		
패션콘텐츠학과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

학과	전공	비고
만화애니게임학과	웹툰만화콘텐츠전공	
	애니메이션전공	
	게임전공	
공연예술학과		
패션콘텐츠학과		

학칙시행세칙 제4조(재입학)

- ①(생략)  
 ② 재입학을 하고자하는 학생은 재입학 기간 내에 '재입학원서, 성적증명서' 각 1부를 첨부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④,⑤,⑥ (생략)

학칙시행세칙 제4조(재입학)

- ①(현행과같음)  
 ② 재입학을 하고자하는 학생은 재입학 신청 기간 내에 '재입학원서, 성적증명서' 각 1부를 첨부하여 신청하고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④,⑤,⑥ (현행과같음)

학칙시행세칙 제7조(수강신청)

- ①,②(생략)  
 ③수강신청은 반드시 본인이 하고 수강신청내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수강신청 내역은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여야 하며 본인이 확인하지 않아 수강신청내역의 착오나 오류가 발생한 경우, 모든 책임은 수강신청자 본인에게 있다.

학칙시행세칙 제7조(수강신청)

- ①,②(생략)  
 ③수강신청은 반드시 본인이 하고 수강신청내역을 확인하여야 한다. 본인이 확인하지 않아 수강신청내역의 착오나 오류가 발생한 경우, 모든 책임은 수강신청자 본인에게 있다.  
 ⑤ <삭제>

학칙시행세칙 제10조(수강신청변경)

매학기 수강 신청한 교과목은 임의로 변경 할 수 없으며, 개설과목의 폐강, 강의 시간의 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수강신청 정정기간에 본인이 직접 변경하여야 한다. 본인이 확인하지 않아 수강신청의 착오나 오류가 추후 발견되는 경우 모든 책임은 수강신청자 본인에게 있다.

학칙시행세칙 제10조(수강신청변경 및 취소)

- ① 매학기 수강 신청한 교과목은 임의로 변경 할 수 없으며, 개설과목의 폐강, 강의 시간의 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수강신청 정정기간에 본인이 직접 변경하여야 한다. 본인이 확인하지 않아 수강신청의 착오나 오류가 추후 발견되는 경우 모든 책임은 수강신청자 본인에게 있다.  
 ② 수강신청한 학점에 대해 학기당 1회의 한하여 취소기간에 (학기개시일로부터 4주 이내) 수강신청학점을 취소할 수 있다.

다.  
 ③수강신청학점을 취소할 경우에도 한 학기 수강신청 최소학점인 15학점이상의 학점을 유지하여야 한다.

학칙시행세칙 제25조(출석인정) 다음에 해당된 결석자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다.  
 ① 아래 인정사항 중 졸업예정자의 취업으로 인한 출석인정과 관련한 상세 사항은 '미출석 취업자 학점부여 세부운영지침'을 따르며 그 외 기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사유	출석인정기간	증빙서류
직계가족의(친가, 외가) 사망	5일 이내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 증명서
징병검사	검사당일 + 2일이내	징병검사 통지서
질병 및 사고에 의한 입원	사안별 7일 이내 (휴일포함)	입원확인이 가능한 의료기관 발급 서류
국가전염병 등의 치료	국가전염병 등교 중지 기간	국가전염병 확인 가능한 진료기록
예비군 훈련 및 민방위 훈련	훈련기간	훈련참석 확인서
정부기관의 요청에 의한 행사 참여	행사 참여기간	확인 가능한 정부기관 초청, 요청 공문서 등
본인의 결혼	5일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국가발급 서류
본인 출산	20일	출생증명서
배우자 출산	5일	출생증명서
취업을 위한 면접 참여	면접당일+2일이내	면접확인서 등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졸업예정자의 취업으로 인한 결석	해당기간	재직증명서 및 건강보험가입 (사실)확인서
기타 학교에서 허가한 사유	허가기간	허가에 필요한 서류 별도 안내

학칙시행세칙 제25조(출석인정) 다음에 해당된 결석자는 [별지3] 출석인정허가원 과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다.  
 ① 아래 인정사항 중 졸업예정자의 취업으로 인한 출석인정과 관련한 상세 사항은 '미출석 취업자 학점부여 세부운영지침'을 따르며 그 외 기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사유	출석인정기간	증빙서류
직계가족의(친가, 외가) 사망	5일 이내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 증명서
징병검사	검사당일 + 2일이내	징병검사 통지서
질병 및 사고에 의한 입원	사안별 7일 이내 (휴일포함)	입원확인이 가능한 의료기관 발급 서류
국가전염병 등의 치료	국가전염병 등교 중지 기간	국가전염병 확인 가능한 진료기록
예비군 훈련 및 민방위 훈련	훈련기간	훈련참석 확인서
정부기관의 요청에 의한 행사 참여	행사 참여기간	확인 가능한 정부기관 초청, 요청 공문서 등
본인의 결혼	5일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국가발급 서류
본인 출산	20일	출생증명서
배우자 출산	5일	출생증명서
취업을 위한 면접 참여	면접당일+2일이내	면접확인서 등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졸업예정자의 취업으로 인한 결석	해당기간	재직증명서 및 건강보험가입 (사실)확인서
기타 학교에서 허가한 사유	허가기간	허가에 필요한 서류 별도 안내
생리공결	월1일 (진료확인서 일자)	진료확인서

학칙시행세칙 부칙 (개정2022.9.1.)  
 (신설)

학칙시행세칙 부칙 (개정2022.9.1.)  
 (시행일) 이 세칙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학칙시행세칙 [별표] 1 스쿨별 규정 주요 내용(유아교육과)  
 - 기타학과 중요 규정 사항-  
 1. 교양학점 이수  
 2019학번부터 대학교양 이수를 위하여, 학과교양 필수과목으로 개설한 [교직인성 리더십 I 자기개발], [교직인성 리더십 II 대인관계], [교직인성 리더십 III 교직원], [교직인성 리더십 IV 공동체] 등 2학점 과목 4과목을 이수하고, 교양교육원(리케이온) 개설 과목 중에서 2학점 이상을 이수하여 총 10학점 이상을 이수하는 것으로 한다.  
 2. (생략)  
 3. (생략)

학칙시행세칙[별표] 1 스쿨별 규정 주요 내용(유아교육과)  
 - 기타학과 중요 규정 사항-  
 1. 교양학점 이수  
 2019학번부터 대학교양 이수를 위하여, 학과교양 필수과목으로 개설한 [교직인성 리더십 I 자기개발], [교직인성 리더십 II 대인관계], [교직인성 리더십 III 교직원], [교직인성 리더십 IV 공동체] 등 2학점 과목 4과목을 이수하고, 교양교육원(리케이온) 개설 과목 중에서 2학점 이상을 이수하여 총 10학점 이상을 이수하는 것으로 한다.  
 단, 교육과정 변경으로 인해 유아교육과 대체과목 인정표'에 기술된 내용에 따라 인정할 수 있다

	2. (현행과같음) 3. (현행과같음)
학칙시행세칙 [별지3] 출석인정허가원	학칙시행세칙 [별지3] 출석인정허가원 양식 변경(결석사유 추가)